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지역제한입찰, 4월 13일부터 확대

지난 4월 13일부터 신규 입찰공고되는 지자체 발주 공사부터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현행 50억원 이하에서 70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공사물량 수혜폭은 일반건설 4천 500억원, 전문건설 2천 300억원 등 연간 6천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 특례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후 공고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발주물량부터 새로운 지역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공사(추정가격 기준)는 △건설법상 일반공사 50억원 이하→70억원 이하 △건설법상의 전문공사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전기공사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상 소방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현행 유지(5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입찰참가 자격을 판정하는 사업자 기준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관할구역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명시되고 낙찰자라도 계약체결일까지 관할구역 내 주된 영업소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제한 특례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연간 신규 수주가능금액은 일반건설업계 4천 500억원(전체 발주물량의 3.3%), 전문건설업계 2천 300억원(전체 발주량의 2.5%), 건설용역업계 402억원(4.8%) 등 총 1조 90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추정치가 지난 2003년도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지역공사발주 증가 등을 고려한 실제 지역업계의 수혜물량은 건설업계만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 현행 | 개정안 |
|--|--|
| <p>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p> <p>제3조(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 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 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p> <p>1.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p> <p>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p> <p>제4조(지역사업자의 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 <p>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p> <p>제3조(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p> <p>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하</p> <p>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p> <p>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이하)</p> <p>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은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 제외)·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울산광역시와 시·군·자치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하</p> <p>제4조(지역사업자의 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p> <p>② _____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_____ 시·도 _____ 시·도 _____ 시·도 _____</p> |